

2024년도 2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4. 9. 4.(수)

행 정 국

2024년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

2024년 4월 10일(수) 보궐선거 후 확정된 보전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보궐선거 실시 개요

- 선거 일 : '24. 4. 10.(수)
- 선거지역 : 1개 지역

선출대상	선출인원	대 상 지 역	사유확정일	비용부담	비 고
시의원	1명	노원구2 (故박환희 의원)	'23.11.17	전액 시비	

□ 예비비 사용 규모 : 130,766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시 선관위 납부액	
		2023년(4분기)	2024년(2분기)
시의원 보궐선거 경비	141,942	11,176	130,766

※ 선거경비 : 선거 준비·실시 경비, 보전경비 등 포함

- 보궐선거 전체 비용 중 '23년 기 납부분을 제외한 비용 추가 납부(보전경비)
- 보궐선거 실시 후 확정되는 보전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해당

【 보궐선거 보전경비 발생사유 】

▶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3인 발생

· 더불어민주당 오금란(43.36%), 국민의힘 김주성(38.85%), 진보당 유룻(15.83%)

※ 선거비용 보전 기준 :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
□ 예비비 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 현액	승 인 액		집행액	집행잔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	
계				-	130,766	130,766	130,766	-
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 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	예비비	일반예비비	90,952,767	-	130,766	-	90,822,001
시·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	시·자치구간 공동협력	지방선거 관리	기타부담금	-	130,766	-	130,766	-

□ 보궐선거 경비 납부근거

【 공직선거법 제122조2 (선거비용의 보전 등) 】

-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.
1.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
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
【 공직선거법 제277조 (선거관리경비) 】

-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(중략)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·도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□ 예비비 사용근거

【 지방자치법 제144조 (예비비) 】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【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 】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